



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August 2021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부당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02

주요 내용



03

'21. 7월 WTO SPS 통보 통계



04

'21. 7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05

[부록] 우크라이나의 동등성
인정절차 제정안 전문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 화 | 044) 201-2080, 208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팩스 | 044) 868-0449

I. WTO SPS 통보 및 현황	03
--------------------	----

II. 주요 내용	04
-----------	----

WTO SPS 통보문

동식물검역

[영국] COVID-19 발생에 따라 검역당국이 허가한 민간기관의 검역대행 잠정 조치 적용기간 연장	4
--	---

동물검역

[미국] 광견병 발병 고위험 국가산 개의 미국 수입 잠정 중지	5
[우크라이나] 수입제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정안	6
[유럽연합] 우제류 전염병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발효 공고	6

식물검역

[뉴질랜드] 재식용 감귤류의 수입검역기준 제정안	7
[유럽연합] 식물병해충 유입방지 시행규정 개정안	9
[중국] 토마토 및 고추종자의 수입검역요건 공표	10

식품안전

[니카라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요건 및 지침 개정	11
[미국] 농약 11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	12
[일본]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13
[캐나다] 농약 1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14

WTO TBT 통보문

식품안전

[르완다] 우유 및 유제품 판매소의 요건 공고	15
[유럽연합] 유기농 동물성 제품의 항생제 관련 추가인증서에 관한 규칙 제정	16



Contents

III. '21. 7월 WTO SPS 통보 통계	17
----------------------------	----

IV. '21. 7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24
----------------------------	----

[부록] 우크라이나의 동등성 인정절차 제정안 전문	26
-----------------------------	----

SPS_{info}NEWS 집필진

검역정책과	연구위원	강신원 (유럽 지역)	농업통상과	연구위원	이소영 (서남아·아랍권 지역)
	연구위원	염윤아 (오세아니아 지역)	동아시아·FTA과	연구위원	김현정 (중국·어권 지역)
	연구위원	이근필 (서반구권 지역)	수출진흥과	연구위원	황기선 (북미 지역)
	연구위원	조은송 (아시아 지역)	식품산업정책과	연구위원	유요예 (아프리카 지역)
관련질의메일	wtoagri@korea.kr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WTO SPS 협정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가간 교역의 부당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S 조치는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SPS 조치의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1. 7월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117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이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물보호(33건), 동물위생(21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13건),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보호(12건)순이었습니다.

* 하나의 WTO SPS 통보에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통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7월 기준, WTO SPS 통보문 및 WTO TBT 통보문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WTO SPS 통보문

동식물검역

01 [영국]

COVID-19 발생에 따라 검역당국이 허가한 민간기관의 검역대행 잠정 조치 적용기간 연장 (G/SPS/N/GBR/10, '21.7.6.)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COVID-19 발생에 따라 검역당국이 허가한 민간기관의 검역대행(분석·실험 영상검역 활동) 잠정 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COVID-19 발생으로 관리 시스템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동식물검역 및 동물복지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관할당국은 엄격한 지침에 따라 개인이 공식 관리 활동을 대행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권한은 개인의 자격증이나 교육 사항 및 경력을 근거로 부여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공식 관리활동 수행 시 관할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전자문서 검사나 국경 또는 국경 외 지역에서의 서류 점검, 영상회의를 통한 업체와의 검역 관련 활동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DEFRA는 2021 공식관리 규정 2차 개정안을 통해 잠정 조치의 적용 종료 일자를 '21.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1/681/made>

WTO SPS 통보문

동물검역

01 [미국]

광견병 고위험 국가산 개의 잠정수입금지 (G/SPS/N/USA/3256, '21.7.16.)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7.14일부터 광견병 고위험 국가산(110개국¹⁾) 개의 수입을 잠정 금지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광견병 저위험 국가 및 청정국가에서 수출된 개도 과거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생육되었다면 이번 조치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참고) 미국은 '07년 광견병 청정국으로 선언

이는 COVID-19 팬데믹 기간('20.1월~12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개 수입시 첨부된 광견병 예방접종 인증서의 미비(incomplete), 미흡(inadequate) 또는 위조가 전년도보다 450건 이상 증가하였다는 CDC 자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 '21.9.12일까지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디,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콩고,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서사하라, 잠비아, 짐바브웨, 벨리즈,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루나이, 부탄, 중국,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공화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도바, 몽골, 미얀마, 네팔, 북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관련 사이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6-16/pdf/2021-12418.pdf>

02 [우크라이나]

수입제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정안

(G/SPS/N/UKR/163, '21.7.8.)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수입제품이 우크라이나 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대한 동등성 인정 절차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출국 정부관리시스템과 우크라이나 정부관리시스템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수출국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됩니다. 또한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동등한 식품 및 사료 안전, 동물 위생 및 복지 수준을 보장하고 동등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동등성 인정 절차 진행시에는 특히 수출국의 ① 역학 및 위생학적 현황, ② 위험 분석 결과, ③ 신청 전 5년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수입된 제품들의 법 준수 여부, 우크라이나 법률 요건에 관한 정보가 검토됩니다.

우크라이나 관할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준수여부 평가 보고서가 승인될 경우, 수출국 정부관리시스템과 우크라이나 정부관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에 대해 수출국 관할당국과 함께 협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의 전문은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UKR/21_4556_00_x.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UKR/21_4556_01_x.pdf

03 [유럽연합]

우제류 전염병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발효 공고

(G/SPS/N/EU/444/Add.1, '21.7.20.)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은 우제류¹⁾의 전염병(소해면상뇌증²⁾ 및 스크래피³⁾)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21.8.8일부터 발효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수입위생조건으로 BSE 위험통제국(지역)산 축산물에는 신규 검역요건이 적용되어 해당 축산물은 신경조직 및 림프가 제거되어야 하며, 반추수에 대한 육골분 및 수지박(greaves) 급여가 금지됩니다.

1) 소, 돼지, 양, 염소, 순록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2) 만성 진행성 질병으로 소의 중추 신경계가 손상을 입어 수개월 이내에 폐사하는 질병

3) 양(羊)이나 염소의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신경질환을 일컫는 말로, 전염성 해면양뇌증(TSE)의 일종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4768_00_e.pdf

01 [뉴질랜드]

재식용 감귤류의 수입검역기준 제정안

(G/SPS/N/NZL/652, '21.7.23.)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감귤속(*Citrus*), 금감속(*Fortunella*), 탕자속(*Poncirus*)에 속하는 재식용 감귤류의 수입검역기준 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재식용 감귤류에는 잎이 없는 접수, 삽수, 기내배양(in vitro) 식물이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잎이 없는 접수 및 삽수의 수입검역기준

- 토양 또는 기타 규제 물질이 없어야 함
- 모든 식물체의 속명 및 종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별표 3과 별표 4에 기재된 처리 요건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뉴질랜드 1차산업부에서 승인받은 대체 처리를 사용하여 곤충 및 응애를 처리하여야 함
 - * 별표 3 : 감귤류 삽수 관련 승인된 살충제 처리 방법(메틸 브로마이드 처리, 열처리, 농약 살충제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별표 4 : 감귤류 삽수 관련 승인된 살비제(응애 처리제) 처리 방법(메틸 브로마이드 처리, 살비제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 살충제 및 살비제 처리 이후 재오염 방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육안으로 확인되는 규제 병해충이 없고, 토양이 묻지 않은 깨끗한 포장재에 포장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 식물에 규제 병해충 또는 기타 규제 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기내배양(in vitro) 식물의 수입검역기준

- 모든 식물체의 속명 및 종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병해충 방지 투명 용기에서 재배하여야 함
- 살균제, 항생제 및 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에서 재배하여야 함
- 선적 전 최소 14일 동안 수출될 용기에서 재배하여야 함
-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류 또는 세균이 없어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요건

- 재식용 감귤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원산지 및 탁송물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재식용 감귤류의 속명 및 종명을 표기하여야 함
- ISPM 12(식물검역증명서 요건)에 부합하는 최고기술책임자의 승인(“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되었으며, 검역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현행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함”)이 있어야 함
- 재식용 감귤류의 탁송물이 뉴질랜드로 운송되는 동안 다른 국가에 저장 및 개봉되거나,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포장에 변경된 경우, ISPM 12에 따라 재수출을 위한 식물검역증명서가 각 탁송물에 동봉되어야 함
- 부기 사항 : “이 탁송물은 합의된 수출 계획서에 따라 수출을 위해 생산 및 준비되었음”, “이 탁송물은 1차 산업부와 [승인된 역외 시설 이름] 간의 협의에 따라 수출을 위해 생산 및 준비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NZL/21_4810_00_e.pdf

02 [유럽연합]

식물병해충 유입방지 시행규정 개정안 (G/SPS/N/EU/499, '21.7.30.)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은 식물병해충 유입방지 시행규정 중 검역/비검역 병해충 목록을 개정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내 식물검역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 기타 품목에 대하여 수입 및 내부이동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역병해충, 보호구역 검역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역병해충 목록에 신규 병해충 12개종 추가(부속서 II)
- 병해충 6개 그룹('속, genus' 단위) 추가 및 4개 그룹 신설
- 3개의 병해충 학명 수정(부속서 II)
- 규제비검역병해충 목록에 신규 병해충 6개종 추가(부속서 IV)
- 금지 상품 목록 개정(부속서 VI)
- 신규 수입조건 추가(부속서 V, VII) : 참다래(*Actinidia* Lindl.) 과실(종자 제외) 및 과수에 대한 규제비검역병해충 예방 조치 추가 등
- 기존의 수입조건 개정(부속서 V, VII, X): 난초과(*Orchidaceae*) 절화의 원산지 분류를 태국과 태국 외 제3국으로 세분화 등
- CN(Combined Nomenclature) 코드¹⁾ 추가 및 개정(부속서 VI, VII, X, XI)
- 규제 상품 목록 개정(부속서 XI, XII): 종자 외 재식용 식물 부문에 신선 이끼류(Mosses, fresh) 추가 등
- 결정 98/109/EC 및 2002/757/EC, 시행규정(EU) 2020/885 및 (EU)2020/1292 폐지

세부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EU의 상품 분류번호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4995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4995_01_e.pdf

토마토 및 고추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공표

(G/SPS/N/CHN/1223, '21.7.16.)

중국 해관총서는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 및 고추(*Capsicum* spp.) 종자의 수입검역요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는 중국 내 반입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병해충에 해당합니다. 중국 반출입 동식물검역법 및 동 법의 시행령에 따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ToBRFV 발생국가(지역)산 중국 수출용 토마토 및 고추 종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중국 수출용 토마토 및 고추 종자는 ISPM 4에 따라 마련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ToBRFV 무발생지역산'이어야 함. 따라서 수출국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은 "XX 종자가 실린 본 화물은 ToBRFV 무발생지역산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공식 조사에 따르면 중국 수출용 토마토 및 고추 종자의 재식 및 생장 기간에는 ToBRFV가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벌크 화물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최소한 3,000개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동 종자 샘플을 RT-PCR 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식물검역 증명서에 "ToBRFV에 대한 공식조사가 생장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재식지에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 수출하기 전에 해당 종자는 RT-PCR 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부기하여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N/21_4613_00_x.pdf

01 [니카라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요건 및 지침 개정

(G/SPS/N/NIC/111/Add.2, '21.7.12.)

니카라과 농축산물보호위생청(IPSA)은 지난 '20.2.4일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시행 요건 및 지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한 바 있으며, 이번 통보문을 통해 해당 지침의 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1차 농산물의 생산, 수확, 운송 및 저장 등과 관련된 GAP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이에게 적용되며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일은 '21.8.29일까지입니다.

해당 지침의 신규대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표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요건 및 지침 신규대조표

번호	구분	현행	개정
1	목적	GAP 이행을 위한 기술요건 및 지침을 제정함	GAP의 이행 및 GAP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요건 및 지침을 제정함
2	적용범위	허가된 제3자 또는 공식인증을 위한 생산지의 1차 생산, 수확, 운송 및 선과장	본 규정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공식인증을 위한 생산지의 1차 생산, 수확, 운송 및 선과장
3	정의	제3자 기관: 적합성 평가의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제3자 기관 지정: 적합성 평가의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관
4	일반규정	GAP 생산제품의 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ANC(관할 국가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고유의 농장번호가 지정됨	생산지 증명 GAP 생산제품의 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ANC에 등록되어야 하며 고유의 농장번호가 지정됨
		허가된 제3자는 개인 및 법인(사설 또는 공공기관, 제3자 인증기관)으로 ANC가 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증명기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운송을 위한 농산물제도의 평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국내외 기관은 IPSA에 등록되어야 하며, ANC가 규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GAP 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외 기관은 제11장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5	허가요건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요건 허가된 제3자는 개인 및 법인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ANC에 생산지 또는 선과장 및 모든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정보를 송부하여야 함	제3자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된 증명 기관은 개인 및 법인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ANC에 생산지 또는 선과장 및 모든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정보를 송부하여야 함
		허가된 제3자 기관 목록은 IP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지정된 증명 기관 목록은 IP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인증기관은 본 규정에서 언급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생산지에 관한 사항, 인증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ANC에 알려야 함	인증기관은 본 규정에서 언급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생산지에 관한 사항, 인증중단 또는 시정조치에 대해 <u>감사종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내에</u> ANC에 알려야 함
		ANC는 본 기술규정 내 수립된 사항 및 ANC가 검토하는 기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허가된 제3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징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ANC는 본 기술규정 내 수립된 사항 및 법률로 규정한 기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허가된 제3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기타	약어	ANC(Autoridad Nacional Competente): 관할 국가기관 IPSA(Instituto de Protección y Sanidad Agropecuaria): 농축산물보호위생청	

02 [미국]

농약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 (G/SPS/N/USA/3254, '21.7.6.)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농산물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플루엔설펜(Fluensulfone), MCPA, 스피로피지온(Spiropidion), 노발루론(Novaluron), 피리데이트(Pyridate), 이산화황(Sulfur dioxide), 후르아자인드리진(Fluazaindolizine) 및 플로니카미드(Flonicamid)의 잔류허용기준(MRL) 제·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주요 제·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Thiabendazole	■ 감귤류 과실 10ppm ■ 가족사료(화분과 제외)/ 비트잎/ 십자화과 잎채소/ 우엉 잎/ 당근 뿌리/ 셀러리와 잎/ 처빌 잎/ 치커리 잎/ 콜라비/ 래디쉬 잎/ 루타바가 잎/ 흑살리파이 잎/ 십자화과 채소/ 사탕무를 제외한 뿌리채소 0.01ppm, 핵과류 과실/ 고구마를 제외한 구경 및 과경 채소 10ppm, 고구마 3ppm	아몬드 (탈각한 것/ 신선, 건조), 당근(건조) 등	28/07/2021	추후결정
Cyprodinil	■ 레몬 0.6ppm, 물냉이를 제외한 십자화과 엽채류 10ppm, 셀터스, 신선 회향 잎/ 잎자루 채소 30ppm, 콜라비/ 십자화과 채소 1ppm, 열대 및 아열대 식용과피 소과류 2ppm, 라임 0.6ppm, 파슬리를 제외한 신선 엽채류 50ppm, 슈가애플 4ppm			
Fludioxonil	■ 루피너스 속 및 강낭콩 속을 제외한 콩과 채소 0.01ppm(대두, 리마콩 국내 기준 0.4ppm) ■ 당근 7ppm(국내기준 0.7ppm), 당근과 인삼 및 사탕무를 제외한 뿌리채소 0.75ppm(비트 국내기준 0.05ppm), 양을 제외한 구경 및 과경 채소 6ppm(감자 국내기준 5ppm) ■ 셀터스 15ppm, 목화씨 0.05ppm, 용과/ 두리안/ 잭프룻/ 열대 및 아열대 식용 과피 소과류 20ppm, 신선 회향 잎/ 잎자루채소 15ppm, 엽채류 30ppm, 망고 스텐/ 단감 5ppm, 해바라기 0.01ppm			
Fluensulfone	■ 사탕무 건조 펄프 0.3ppm, 사탕무 잎 4ppm, 사탕무 당밀, 콜라비, 십자화과 채소 1.5ppm, 사탕무 뿌리 0.2ppm, 십자화과 엽채류 20ppm, 셀터스/ 신선 회향 잎과 줄기/ 엽채류/ 잎자루채소 4ppm			
MCPA	■ 클로버 조사료 및 건초 0.1ppm			
Spiropidion	■ 박과채소 0.8ppm, 과채류/ 감자 1.5ppm, 대두/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껍질 3ppm, 토마토 퓨레 2ppm, 건조 토마토 15ppm, 건조 토마토 부산물 40ppm, 가금류 육/ 가금류 육류부산물/ 가금류 지방/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소,염소,돼지,말,양 육류부산물/ 소,염소,돼지,말,양 지방 0.01ppm, 대두 분 (meal, flour) 5ppm, 폴라드 4ppm, 대두 6ppm, 껍질을 제거한 생 감자/ 껍질 채 구운감자/ 감자 부산물/ 건조 감자 펄프 3ppm, 감자칩/ 감자튀김 2ppm, 알감자/ 플레이크/ 감자 단백질 5ppm			
Novaluron	■ 작물 하위그룹 6-19A(식용과피 두류)/ 6-19C(정선된 두류) 0.7ppm, 작물 하위그룹 6-19B(식용과피 완두류) 2ppm, 작물 하위그룹 6-19D(정선된 완두류) 0.05ppm, 작물 하위그룹 6-19E(건조 정선된 완두류) 0.3ppm, 견과류 나무 0.07ppm, 아몬드/ 조사료용 완두 15ppm			
Pyridate	■ 렌틸 0.4ppm, 유채씨 0.015ppm			
Sulfur dioxide	■ 블루베리 9ppm			
Fluazaindolizine	■ 가금류 지방/ 가금류 육/ 가금류 육류부산물/ 달걀 0.01ppm			
Fonicamid	■ 퍼지키위를 제외한 덩굴성 소과류 3ppm(딸기 국내기준 3ppm)			

관련 사이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6-28/html/2021-13702.htm>

03 [일본]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G/SPS/N/JPN/857 외 6건, '21.7.30. 외 6건)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약 2,4-D,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MCPA, 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 MCPB,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및 스피네토람(Spinetoram)의 잔류허용기준(MRL) 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삭제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문서번호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JPN/855	2,4-D	■ 메밀(국내기준 0.5ppm), 토마토(국내기준 0.1ppm), 당근(국내기준 0.1ppm) ■ 살구 0.05ppm(국내기준 2ppm), 포도 0.1ppm(국내기준 0.5ppm) ■ 보리 2ppm(국내기준 0.5ppm), 감자 0.4ppm(국내기준 0.2ppm), 밀기 0.1ppm(국내기준 0.05ppm) ■ 밀 2ppm, 대두(건조한 것) 0.01ppm, 체리 0.05ppm	포도(신선), 토마토(신선, 냉장)	28/09/2021	추후 결정
G/SPS/N/JPN/857	Fosthiazate	■ 브로콜리 0.01ppm(국내기준 0.5ppm), 가지 0.02ppm(국내기준 0.05ppm), 수박 0.04ppm(국내기준 0.1ppm) ■ 딸기 0.2ppm(국내기준 0.05ppm) ■ 우엉 0.05ppm	가지(신선, 냉장), 수박(신선)		
G/SPS/N/JPN/858	MCPA	■ 포도(국내기준 0.05ppm), 대두(국내기준 0.05ppm) ■ 밀 0.04ppm(국내기준 0.2ppm) ■ 레몬 1ppm(국내기준 0.05ppm), 오렌지 0.8ppm(국내기준 0.05ppm) ■ 쌀 0.05ppm	쌀가루, 포도(신선)		
G/SPS/N/JPN/859	Dimethenamid	■ 감자 0.01ppm(국내기준 0.1ppm), 마늘 0.01ppm(국내기준 0.05ppm), 양배추 0.05ppm(국내기준 0.07ppm), 양파 0.01ppm(국내기준 0.05ppm), 옥수수 0.01ppm(국내기준 0.1ppm) ■ 호프 0.05ppm	감자(기타/조제 저장처리/냉동제외), 마늘(냉동), 양배추(신선, 냉장)		
G/SPS/N/JPN/860	MCPB	■ 완두콩(국내기준 0.1ppm) ■ 쌀(현미) 0.02ppm(국내기준 0.05ppm) ■ 생강 0.2ppm(국내기준 0.05ppm)	쌀가루		
G/SPS/N/JPN/861	Metaflumizone	■ 딸기 0.02ppm(국내기준 0.05ppm) ■ 생강 0.2ppm(국내기준 0.05ppm), 옥수수 0.1ppm(국내기준 0.05ppm)	초본류 딸기(신선)		
G/SPS/N/JPN/862	Spinetoram	■ 당근 0.02ppm(국내기준 0.05ppm) ■ 수박 0.08ppm	수박(신선), 당근(건조)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63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68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69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70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71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72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4973_00_e.pdf

04 [캐나다]

농약 1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G/SPS/N/CAN/1405, '21.7.28.)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여러 종류 농산물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설파사플로르(Sulfoxaflor)의 잔류허용기준(MRL) 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 없음

주요 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Sulfoxaflor	■ 아스파라거스 0.01ppm(국내기준 0.3ppm)	-	28/08/2021	추후결정
	■ 부시베리 (작물 하위그룹 13-07B, 구스베리 제외) 2.0ppm, 케인베리(작물 하위그룹 13-07A) 1.5ppm, 아티초크 0.7ppm, 퀴노아 0.08ppm			

관련 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html>

01 [르완다]

우유 및 유제품 판매소의 요건 공고

(G/TBT/N/RWA/474, '21.7.29.)

르완다 표준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우유 및 유제품 판매소(Milk zone)의 정의, 위치, 구조, 시설 및 위생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유 및 유제품 판매소 정의

- 우유 및 유제품이 판매되는 관할당국이 승인한 공공장소

2. 위치

- 쓰레기 또는 폐기물 처리장소와 같은 장소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깨끗한 음용수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3. 구조

- 구조물 및 건축 자재는 국가 건물 규정 및 관련 규격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즉시 세척이 가능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유리 타일 또는 관할당국이 승인한 기타 재료와 같이 쉽게 세척 할 수 있는 불침투성 재료로 구성되어야 함

4. 시설

- 도로 시설 : 우유 및 유제품 판매소에 인접한 도로는 르완다 농촌 도로 기준에 따라 적어도 압축된 자갈길이어야 함. 또한, 건물 주변, 주요 내부 진입로, 적재용 베이/loading bay) 및 차량 통행이 필요한 모든 구역은 포장되어야 함
- 수도 시설 : 항상 충분한 음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시에는 음용수를 깨끗한 물통에 보관하여야 함
- 전력 시설 : 르완다 전력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전선 및 소켓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함

5. 위생 요건

- 황달, 설사, 구토, 발열, 인후통,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자는 즉시 식품 취급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함
- 식품 매개 질병의 보균자이거나 이전에 보균자로 확인이 된 자는 비 보균자로 인증받기 전까지 식품 취급 활동을 할 수 없음
- 판매자는 장티푸스, A형 간염과 같은 수인성 질병이 없어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RWA/21_4888_00_e.pdf

02 [유럽연합]

유기농 동물성 제품의 항생제 미사용 관련 추가인증서 발급 규칙 제정 (G/TBT/N/EU/824, '21.7.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기농 동물성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항생제 미사용에 관한 추가인증서를 발급하는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제3국의 요청에 따라 기업체는 이러한 인증서를 통해 대상 제품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칙은 '2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인증서 양식(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추가인증서 양식(안)

1. 문서번호	2. 제출자: 개별 기업체 / 기업 단체 (택1)
3. 개별 기업체 또는 기업 단체명 및 주소 :	4. 관할 기관명 및 주소(규제 당국 또는 기업 규제 기관을 기입할 경우, 기관 코드 작성):
5. 발급받은 유기농 생산 인증서 문서번호(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 (EU) 2018/848에 따름):	
본 인증서는 해당 기업체 또는 기업 단체가 다음의 유기농 동물성 제품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되었음 1.(제품명)..... 2.(제품명)..... 3.(제품명).....	
6. 날짜, 기관 위치(place) : 인증서 승인 기관명 및 직인(서명)	7. 다음의 추가인증서는 [XXXX년 X월 X일] 부터 [XXXX년 X월 X일]까지 유효함

관련 사이트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rch/?tbtaction=search.detail&Country_ID=EU&num=824&dsplLang=en&basdatedeb=&basdatefin=&baspays=&basnotifnum=824&basnotifnum2=&bastypepays=&baskeywords



'21. 7월 WTO SPS 통보 통계

'21. 7월 기준, WTO SPS 통보 총 117건을 국가, 주요내용,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검역(19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러시아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말레이시아산 살아있는 소의 잠정수입금지(6월 29일)	말레이시아	살아있는 소	동물위생;	G/SPS/N/RUS/233
2	미국	광견병 발생국가산 개의 잠정수입금지(7월 14일)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개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USA/3256
3	베트남	식품의 규격 및 기준(담수어 종자) - 쏘종개(Striped catfish) 등	모든 교역국	수산물(담수어)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VNM/119
4	베트남	식품의 규격 및 기준 - 새우 종자	모든 교역국	수산물(새우)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VNM/120
5	베트남	식품의 규격 및 기준 - 블랙타이거 새우, 흰다리새우 등	모든 교역국	수산물(새우)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VNM/121
6	브라질	사료첨가제의 기준 및 규격 발효(8월 2일)	모든 교역국	사료첨가제	식품안전;	G/SPS/N/BRA/1853/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7	브라질	반려조류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검역증명서 첨부)	모든 교역국	동물(조류)	동물위생;	G/SPS/N/ BRA/1960
8	우크라이나	동물성 제품(식품, 가죽 등)의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 규칙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소 혈액)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UKR/165
9	유럽연합	우제류 동물의 전염병(소해면상뇌증 및 스크래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발효 공고(8월 8일)	BSE 위험통제국 및 관련 지역	축산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EU/444/Add.1
10	칠레	축산물(가금류, 돼지, 말) 부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내장, 육골분, 지방 등)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위생;	G/SPS/N/ CHL/685
11	카자흐스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독일 일부 지역산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독일 내 작센-안할트, 작센, 바이에른, 베를린 및 브레멘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KAZ/87
12	카자흐스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폴란드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KAZ/88
13	카자흐스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체코 일부 지역산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체코 내 다수 지역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KAZ/89
14	콜롬비아	말 비강폐렴 발생에 따른 살아있는 말의 긴급 수입위생조건 해제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말	동물위생;	G/SPS/N/ COL/326/ Add.1
15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프랑스 일부 지역산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프랑스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0
16	태국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미얀마산 살아있는 소의 잠정수입금지(7월 28일)	미얀마	축산물 (소, 물소 등)	동물위생;	G/SPS/N/ THA/421
17	터키	살아있는 이미패류 연체동물의 수입허용국 목록 개정 공고(6개월간 검사 진행 후)	모든 교역국	수산물 (이미패류)	식품안전;	G/SPS/N/ TUR/12/Add.1
18	페루	니카라과산 식용 소 혈액의 수입검역요건 승인	니카라과	축산물 (소 혈액)	동물위생;	G/SPS/N/ PER/938
19	필리핀	호주 빅토리아 주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해제(7월 2일)	호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 PHL/466/Add.2

식물검역 (37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뉴질랜드	생물안전성 관리를 위한 개인 탁송물 및 수화물의 수입검역기준 제정안 - 40kg 이하 수화물에 적용	모든 교역국	수화물	식물보호;	G/SPS/N/ NZL/651
2	뉴질랜드	재식용 감귤류의 식물검역요건(안)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물 (감귤류)	식물보호;	G/SPS/N/ NZL/652
3	대한민국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목록 개정 - 바나나뿌리썩이선충(<i>Radopholus similis</i>) 기주식물 추가	해당 국가 통보문 참조)	식물 (금지병해충)	식물보호;	G/SPS/N/ KOR/248/ Add.20
4	러시아	벼룩파리과 병해충(Phoridae) 발생에 따른 잎담배 및 그 부산물의 잠정수입금지	브라질, 인도,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RUS/234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5	멕시코	브라질산 멜론(<i>Cucumis melo</i> L.)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브라질	식물 (멜론)	식품안전;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MEX/395
6	멕시코	관상용 작약의 절화 및 잎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물 (작약)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MEX/393/Add.1
7	브라질	인도산 수박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인도	식물 (수박)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 BRA/1956
8	브라질	식물성 산물의 전자증명서 시행 및 서식 변경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BRA/1955/ Add.1
9	브라질	감귤궂양병균 예방을 위한 브라질 Ceara 주의 위험경감 시스템 시행	모든 교역국	병해충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BRA/1957
10	브라질	비규제 검역병해충 목록 개정	모든 교역국	병해충	식물보호;	G/SPS/N/ BRA/1958
11	브라질	메르코수르(Mercosur)국산 딸기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딸기)	식물보호;	G/SPS/N/ BRA/1959
12	브라질	Mercosur 국가산 옥수수(<i>Zea mays</i>)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 식용 옥수수 운송 시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증명서만 제출 가능함	모든 교역국	식물 (옥수수)	식물보호;	G/SPS/N/ BRA/1929/ Add.1
13	스위스	스위스 내 시판 가능한 유전자조작식품(GMO) 목록 제정 (Endo-1,4-β-xylanase, Phospholipase A2)	모든 교역국	식품 (GMO)	식품안전;	G/SPS/N/ CHE/77/Add.2
14	에콰도르	호주산 파종용 양파(<i>Allium cepa</i>)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호주	식물 (양파)	식물보호;	G/SPS/N/ ECU/259
15	에콰도르	남아프리카산 점목용 식물(<i>Leucospermum</i> spp.)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남아프리카	식물	식물보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ECU/260
16	에콰도르	네덜란드산 파리지옥풀(<i>dionaea</i>)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네덜란드	식물	식물보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ECU/261
17	에콰도르	미국산 재식용 블루베리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미국	식물 (블루베리)	식물보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ECU/262
18	영국	일부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검역조치 해제 - <i>Apricot latent virus</i> , <i>Aucuba mosaic agent</i> , <i>blackcurrant yellows agent</i> , <i>Epidiaspis leperii</i> 등	모든 교역국	식물 (병해충)	식물보호;	G/SPS/N/ GBR/8/Add.1
19	유럽연합	식물병해충 유입 방지 시행규정 개정 - 검역/비검역 병해충 목록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물 (병해충)	식물보호;	G/SPS/N/ EU/499
20	인도	식물검역 규정 개정안 발효 - 수입농산물 검역규제 조항의 완화 (십자화과, 고추과 과채류 등)	부탄, 페루, 우루과이	농산물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IND/263
21	중국	토마토 및 고추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 토마토바이러스(ToBRFV) 청정 지역 및 비발생 요건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물 (병해충)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CHN/1223
22	칠레	북미 캘리포니아산 피스타치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미국	식물 (피스타치오)	식물보호;	G/SPS/N/ CHL/681
23	칠레	COVID-19 발생에 따른 영상검역을 통한 토마토 수출작업장 승인 시행	페루	식물 (토마토)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CHL/682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4	칠레	땅콩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 훈증처리를 한 제품은 수입을 허용함	모든 교역국	식물 (땅콩)	식물보호;	G/SPS/N/ CHL/683
25	칠레	모든 교역국산 땅콩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땅콩)	식물보호;	G/SPS/N/ CHL/683/ Add.1
26	칠레	바나나좀나방(<i>Opogona sacchari</i>) 기주식물의 긴급 식물검역조치 제정 - 병해충위험평가 완료 시까지 선적 금지	코스타리카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 CHL/609/ Rev.1
27	칠레	브라질산 신선 망고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브라질	식물(망고)	식물보호;	G/SPS/N/ CHL/684
28	카자흐스탄	버섯종균에 대한 식물검역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버섯)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KAZ/90
29	카자흐스탄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서식 변경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KAZ/91
30	카자흐스탄	벼룩파리(<i>Megaselia scalaris</i>) 규제를 위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목록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검역대상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KAZ/92
31	페루	세르비아산 보리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세르비아	식물 (보리)	식물보호;	G/SPS/N/ PER/939
32	페루	세르비아산 해바라기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세르비아	종자 (해바라기)	식물보호;	G/SPS/N/ PER/940
33	페루	세르비아산 콩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세르비아	종자 (콩)	식물보호;	G/SPS/N/ PER/941
34	페루	세르비아산 밀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세르비아	종자 (밀)	식물보호;	G/SPS/N/ PER/942
35	페루	우즈베키스탄산 신선 고추의 수입검역요건(안) 제정	우즈베키스탄	식물 (고추)	식물보호;	G/SPS/N/ PER/943
36	호주	병해충 곡식수시령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공고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 AUS/502/ Add.11
37	호주	이탈리아 및 프랑스산 신선 키위 과실의 수출전, 검역조치 시행 - MB 훈증 조치	이탈리아 및 프랑스	식물 (키위)	식물보호;	G/SPS/N/ AUS/525

식품안전 (61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약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ZAF/75
2	니카라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농산물	식품안전; 식물보호;	G/SPS/N/ NIC/111/Add.2
3	대만	특정 수입식품의 검사규정 준수 공고 - CCC코드로 분류된 제품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PKM/569
4	대만	식품의 규격 및 기준 - 유제품	모든 교역국	유제품	식품안전;	G/SPS/N/ TPKM/570
5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원료 목록, 동물용의약품 MRL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26
6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58종) 및 잡종 허용기준 삭제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27
7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28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8	대한민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 ICT를 활용한 영상검역 시행 예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29
9	대한민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 개인 구입 식품정보의 게시허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30
10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요청 -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플루다옥소닐(Fludioxonil) 외 다수, 국내보다 강화(레몬, 두류 등)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54
11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톨펜피라드(Tolfenpyrad), 국내기준 없음(아티초크)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55
12	미국	식품첨가물(파란색 색소) 사용 규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지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색소)	식품안전;	G/SPS/N/ USA/3257
13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플록사피록사드(Fluxapyroxad)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58
14	베트남	수입식품 품질관리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22년 1월 1일까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VNM/122
15	영국	COVID-19 발생에 따른 검역당국이 허가한 민간기관의 검역대행 잠정 조치 제정(분석·실험 영상검역 활동)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GBR/10
16	영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오메토에이트(Ometho ate), 국내보다 강화(당근, 무, 파) * 한국 수출품목: (신선)무, 귀리(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GBR/6/Add.1
17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은색 정어리 분말(수분 및 지방함량 등)	모든 교역국	식품(정어리)	식품안전;	G/SPS/N/ UGA/164
18	우크라이나	수입제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정 공고 (수출국 제품이 우크라이나법을 준수하는 경우)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 UKR/163
19	우크라이나	농약사용에 관한 위생표준 및 규정 승인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KR/164
20	우크라이나	식품 및 위생조치 대상제품 관리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 UKR/143/Add.2
21	우크라이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국내 PLS적용 농약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KR/160/Add.1
22	유럽연합	스테비아(Stevia) 유래 스테비올배당체 및 리바우디오사이드 사용 허가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EU/497
23	유럽연합	농약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의 사용허가 갱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EU/498
24	인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힌두교 대체의학(아유르베다)서적에 따른 특정식품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IND/264
25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국내기준 없음(참깨, 딸기, 호박 등) * 한국 수출품목: 다수 농산물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641/Add.1
26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국내보다 강화(토마토) * 한국 수출품목: (신선)토마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00/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7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국내보다 강화(배추, 양파, 마늘 등) * 한국 수출품목: (신선)토마토, 양파, 단고추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01/Add.1
28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피메트로진(Pyrimethozine), 국내보다 강화(감자) * 한국 수출품목: (신선)멜론, 감자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02/Add.1
2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및 트랄로메트린 (Tralomeethrin), 국내보다 강화(멜론, 복숭아) * 한국 수출품목: (신선)복숭아, 멜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03/Add.1
30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에타복삼(Ethaboxam), 국내보다 완화(양배추, 브로콜리 등) * 한국 수출품목: (신선)양배추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16/Add.1
31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국내기준 없음(사탕무, 차) * 한국 수출품목: 차, 마태 조제품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17/Add.1
32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티옥사카펜(Tioxazafen), 국내미사용 농약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18/Add.1
33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채택 - Oxfendazole, Febantel 및 Fenbendazole, 국내 미사용 제품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JPN/819/Add.1
34	일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2,4-D, 국내보다 강화(살구, 포도) * 한국 수출품목: (신선)포도, 토마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55
35	일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국내기준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56
36	일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국내보다 강화(브로콜리, 수박 등) * 한국 수출품목: (신선)수박, 가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57
37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MCPA, 국내보다 강화(밀) * 한국 수출품목: 쌀가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58
38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 국내보다 강화(감자, 마늘 등) * 한국 수출품목: (신선)양배추, 마늘(냉동)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59
3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MCPB, 국내보다 강화(쌀) * 한국 수출품목: 쌀가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60
40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국내보다 강화(딸기) * 한국 수출품목: (신선)딸기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61
41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스피네토람(spinetoram), 국내보다 강화(당근) * 한국 수출품목: (신선)수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62
42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펜헥사미드(Fenhexamid), 디플루벤주론 (Diflubenzuron) 외 다수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JPN/863
43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국내기준보다 완화(콩과 채소) * 한국 수출품목: 껍데기를 벗긴 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98
44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국내기준 없음(케인베리)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99
45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디캄바(Dicamba), 국내기준 없음(목화씨)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0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46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아메토티라딘(Ametoctradin), 국내기준 없음(케인베리)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1
47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피리데이트(Pyridate), 국내기준 없음(과채류)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2
48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국내기준 없음(감귤류)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3
49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국내기준 없음 (사탕무)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4
50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설펍사플로르(Sulfoxafior), 국내기준 없음(베리류)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5
51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보스칼리드(Boscalid), 국내기준 없음(케러웨이)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6
52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세톡시딴(Sethoxydim), 국내기준 없음(바질)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7
53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피록사설폰(pyroxasulfone), 국내기준 없음(민트류)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8
54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브로모시닐(bromoxynil), 국내기준 없음(카나리그라스)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09
55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피록사설폰(pyroxasulfone), 국내기준 없음(과채류)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410
56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스트렙티실롬 모바라엔스 S-8112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CAN/1411
57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야로비아 리폴리티카 VRM 유래 스테비올 배당체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CAN/1412
58	콜롬비아	동물성 고위험식품의 검사, 예찰 및 통제시스템 간소화 절차 공표(우유, 난제품,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모든 교역국	동물성 식품	식품안전;	G/SPS/N/ COL/264/Add.3
59	터키	식품의 규격 및 기준 - 과실주(발효주, 사이다 맥주)	모든 교역국	식품(과실주)	식품안전;	G/SPS/N/ TUR/118
60	호주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플루아자인돌리진(Fluazaindolizine), 플루아자인돌 리진(Fluazaindolizine) 등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AUS/526
61	홍콩	식품 유해물질 기준 제정 - 사전포장식품의 표시조건에 관한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HKG/45/Add.1

* 통보문 원문 및 번역본 관련 상세내용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1. 7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동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러시아	말레이시아	살아있는 소의 잠정수입금지	29/06/2021
미국	관련 국가 ¹⁾	고위험 광견병 발생 국가로부터 개의 잠정수입금지	14/07/2021
유럽연합	BSE 위험통제국 및 관련 지역	소과, 양과 및 염소과 동물 제품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08/08/2021
칠레	모든 교역국	가금류, 돼지 및 말 부산물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카자흐스탄	독일의 안할트, 작센, 바이에른, 베를린 및 브레멘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 종란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05/06/2021
	체코공화국 중양보헤미아, 출린, 모라바슬레스코, 비스치나, 파르두비체 및 필센 지역		05/06/2021
	폴란드		05/06/2021
콜롬비아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말의 잠정수입금지 해제	01/07/2021

1)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지부티, 이집트,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디,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콩고,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부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서부 사하라, 잠비아, 잠바abwe, 벨리즈,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루나이, 부탄, 중국,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 공화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도바, 몽골, 미얀마, 네덜란드, 북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통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태국	미얀마	소, 물소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8/07/2021
	프랑스	살아있는 가금류, 종란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7/07/2021
페루	니카라과	식용 소 혈액의 수입검역요건 승인	23/06/2021
필리핀	호주	살아있는 가금류, 종란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해제	02/07/2021

식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대한민국	관련 국가 ²⁾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색이선충(<i>Radopholus similis</i>)의 기주식물 추가	20/07/2021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의 잠정수입금지	19/07/2021
	말라위		
	브라질		
	인도		
멕시코	브라질	멜론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브라질	인도	수박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02/08/2021
	모든 교역국	규제비검역병해충 목록 개정	02/08/2021
		딸기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02/08/2021
	모든 교역국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법령 개정	01/05/2020
에콰도르	남아프리카	접목용 <i>Leucospermum</i> 속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07/07/2021
	네덜란드	파리지옥속(<i>Dionaea</i>)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22/06/2021
	미국	재식용 블루베리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22/02/2021
중국	모든 교역국	토마토 및 고추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칠레	모든 교역국	땅콩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08/07/2021
	미국	<i>Pistacia</i> 속 식물 및 삽수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코스타리카	바나나줄나방(<i>Opogona sacchari</i>) 기주식물의 잠정수입금지	15/07/2021
호주	모든 교역국	곡식수시령이의 긴급조치	추후예정
	이탈리아	신선 키위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12/07/2021
	프랑스		

2) 캐나다, 멕시코, 미국, 중앙아메리카 모든 국가, 남아메리카: 모든 국가, 아프리카: 모든 국가, 브루나이, 중국(제한 지역: 광둥성 내 광저우시, 마오밍시, 선전시, 복건성: 및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레바논, 말레이시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예멘,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호주 (타즈메니아 제외), 쿡 아일랜드, 피지, 괌, 하와이 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웨, 노퍽섬,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폴리네시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 군도, 통가



경제개발무역농업부
(Ministry of Economy of Ukraine)

법령

—

정부관리시스템 내 수출국 허가 및 인정 절차 승인 건

“식품, 사료, 동물 유래 부산물, 동물 건강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관리 사안” 우크라이나 법 제62조 제4항 및 2014년 8월 20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에 따라 승인된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 규정 제9항 459호(2021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에 따른 개정 124호)에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1. 정부관리시스템 내 수출국 허가 및 인정 절차 승인.
2. 2014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훈장 수여 118호 “유럽연합(EU)의 동물원료, 제품 생산 및 유통과 이를 관리 하는 시스템 상 일치함을 인정” (2014년 4월 16일,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431/25208로 등록) 해당 법률을 무효로 인정함.
3. 위생 및 식물 위생 방안 정책의 주 정책 국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준수하여 우 크라이나 법무부에 본 국가등록명령을 제출할 것을 보장함.
4. 본 법령은 공식 발표 이후 3개월 후 발효됨.
5. 책임 소지에 준수하여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 차관이 본 법령이행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 장관
이호르 페트라쉬코(Ihor Petrashko)

정부관리시스템 내 수출국 허가 및 인정 절차

1. 본 절차에서 정부관리시스템 내 수출국 허가 및 인정 절차(이하 “절차”)를 정한다.
2. 본 절차에서 우크라이나 법 “식품, 사료, 동물 부산물, 동물 위생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준수한 주 정부의 관리 사항”(이하 “법”)이라는 의미로 해당 용어가 사용된다.
3. 수출국의 정부관리시스템과 우크라이나의 정부관리시스템이 일치함을 인정하는 행위는 수출국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관리시스템이 식품 및 사료안전, 동물 위생, 복지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 동물 위생 및 복지를 확인하고 수출국의 정부관리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법률과 준수하는지 검증(이하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4. 주무기관은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법 제59조 제3항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주무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법률 요건에 따라 관할당국이 정한 쟁점 목록 형식으로 해당 요청서를 관련 분야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 목록은 특정 요구사항의 주요 부분과 일부분으로 구성된다. 수출국의 모든 정부 관리 영역에 쟁점의 주요 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의 일부는 일치여부에 대한 인정 절차로 착수되는 분야의 특정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관할당국이 구성한다.
다음의 정보를 고려한다.
 - 1) 수출국의 역학 및 위생학적 현황
 - 2) 위험 분석 결과
 - 3) 요청 접수 전 5년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수입된 제품의 준법 준수 여부, 우크라이나 법률 요건에 관한 정보해당 절차의 부속서 1에 수출국 정부관리시스템의 동등성에 관한 적합성 평가 지표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출국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확대 해석할 수 있다.
5.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적합성 검증은 2019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사항 589호 “수출국 정부관리절차의 승인 건”(이하 “관리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적합성 평가 보고서는 정보 적합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속서 2(이하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6. 보고서 승인이 진행될 경우, 주무기관은 수출국의 정부관리시스템(해당 시스템의 부록)과 우크라이나의 정부관리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 받아 수출국의 관할기관과 협정 초안(이하 “협정 초안”)을 작성한다.
7. 협정 초안에는 수출국의 정부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시스템의 부분과 우크라이나의 정부관리시스템이 일치함을 인정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8. 또한 협정 초안은 법률 제60조의 일부에 규정된 정부관리 또는 특별 조치의 일반적 적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9. 관할기관의 관리자는 우크라이나어와 영어로 또는 수출국의 공식 언어로 협정 초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수출국의 관할당국으로 송부해야 한다.

10.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협정서를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정이 체결된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세관 영토로의 제품 수입(출고)이 허용되는 국가 및 시설로 등록된다.
11. 관리절차에서 정한 수출국 정부관리조치 이행절차 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동등성 약정의 적절한 이행을 검증하는 기타 절차를 통하여 협정서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수출국의 정부관리시스템(해당 시스템의 부분)과 우크라이나의 정부관리시스템이 동등함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이하 “동등성 인정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무기관이 결정한다:
- 1) 수출국이 우크라이나의 법률 요건에 따라 정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목적으로 수행한 협정의 적절한 이행일 경우;
 - 2)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울 경우 및 수집된 정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경우;
 - 3) 수출국에서 정부관리조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경우
13.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맺지 않은 수출국 정부관리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한 행위는 관제절차가 정한 수출국 정부관리 조치를 기반으로만 적용된다.
14. 동등성 인식에 대한 결정은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정부관리시스템의 동등성이 인정되는 수출 국가 또는 그 별도 영토(구역 또는 지역);
 - 2) 수출국 정부관리시스템 전체의 동등성 인정, 수출국 정부관리시스템의 일부에 대한 동등성 인정 및/또는 동등성 부분 인정, 정부관리, 특정 생산물의 특정 측정과 관련될 수 있는 동등성의 부분 인정;
 - 3)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부관리특수조치 또는 해당 수출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출하)할 때 적용되는 정부관리 일반조치안전 분야 및 식품 품질의 특정 지표, 수의학 분야,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특수 조건에서의 국가 정책 수립 및 이행;
 - 4) 동등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타 조건 및 제품 수입에 대한 조건:
15. 동등성 인정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세관 영토로 제품을 수입(출고) 하는 국가 및 시설의 등록부, 수출국에 소재하고 해당 수출국이 승인하는 시설의 등록부에 기재된다. 동등성 인정 결정에 대한 자동 도입이 재고되지 않을 경우 2018년 6월 11일 (번호. 262) 농업 정책부에 의거하여 우크라이나 세관 영역으로 제품 수입(선적)이 허용되는 수출 국가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정부관리절차 및 유지관리 절차 승인 시, 우크라이나 관세 영역으로 제품을 수입(출하)하는 국가 및 시설의 관할 등록부 제776/32228호에 대해 2018년 7월 4일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등록됨을 확인한다.
- 우크라이나의 세관 영토로 제품의 수입(출고)이 허용된 국가 및 허용량 등록에 포함된 시설과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의 세관 영토로 수입된 시설은 예외일 수 있다.
16. 동등성 인정 결정은 관할기관의 명령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보고 접수 후 결정서 채택 후 근무일 2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
17. 적합성 평가에 근거하여 동등성 인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관할당국은 보고서를 수령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서면 및/또는 이메일로 수출국의 관할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18. 수출국의 정부관리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동등성 인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수출국의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생·생체위생 조치권 국가정책국
부국장 및 소비재 및 유기농 생산부 부서장
류드믈라 호미차크(Lyudmyla Khomichak)